

第52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本會議 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10月27日(金) 11時 12分 開議

議事日程(제2차 本會議)

1. 서울特別市鍾路區觀光事業에 관한過徵金徵收條例(案)
2.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鍾路區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型및 多衆利用施設安全點檢結果報告의 件

附議된 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觀光事業에 관한過徵金徵收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1面
2.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1面
3. 서울特別市鍾路區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1面
4. 大型및 多衆利用施設安全點檢結果報告의 件(羅在岩議員 外 4人 發議)7面

(11時12分 開議)

○議長 金憲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구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나오셨는데 鄭興鎭 區廳長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財務局長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區廳長 鄭興鎭 존경하는 金憲中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새로이 저희 구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95년 10월 1일자로 금친구 財務局長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구 財務局長으로 발령된 金誠泰 財務局長을 소개하겠습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방금 廳長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財務局長 金誠泰입니다.

앞으로 金憲中 議長님을 비롯한 議員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구정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또 구정을 집행하는 자리에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해서 종로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憲中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區廳長님!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在籍議員 21名 中 出席議員 19名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제

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받고 안전별로 심의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鍾路區觀光事業에관한過徵金徵收條例(案) (鍾路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鍾路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鍾路區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鍾路區廳長 提出)

(11時15分)

○議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鍾路區觀光事業에 관한過徵金徵收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鍾路區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3건의 안건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위원회 玄壽漢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玄壽漢 市民行政委員會 委員長 玄壽漢입니다.

존경하는 金憲中 議長님, 洪承台 副議長님을 비롯한 동료 議員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장시간 진지하게 의안을 심사해주신 시민행정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로구청 관계관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52회 임시회기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종로구관광사업에 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외 3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관광사업에 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권한 중 일부가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구로 '95년 6월 20일 재위임됨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직제를 조정하여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시간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국민정신운동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과 구민의 생활체육 증진에 대한 욕구가 팽배하는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요구되는 바 세원 발굴 등의 재정 확충을 위한 직제 조정도 중요하나 주민의 정서함양과 국민건강을 위하여 기존 기구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구개편은 하지 않기로 의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연구 기술분야 등의 전임 전문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에서 제외하여 채용, 관리하여 왔으나 이를 정원에 포함하여 예산의 낭비와 인사질서의 문란의 소지를 없애는 제도적 보완장치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3월 1일 우리 구 직제개편에 따라 토지관리과가 지적과로 통폐합됨에 따른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종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내용 중 제6조 간사 및 서기의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서울특별시종로구관광사업에 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10. 26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9월 11일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5년 9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5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指

(제안설명자 : 문화공보실장 김태호)

가. 제안이유

- 국내·외 여행업 등록 및 행정처분 등 단순하고 일상적인 관광사업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 절차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위반행위의 중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장소를 명확히 한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의거 통지하여야 함(안 제2조)
-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안 제4조)
- 과징금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 강제징수(안 제5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指

(보고자: 전문위원 장소수)

〈개정배경〉

-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사업 즉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 용역업, 관광편의 시설업, 카지노업 등 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 중에서
- 여행업(일반여행업은 제외) 중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과 관련된 일부 권한이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으로써 이에 따른 과징금 징수규정을 마련코자 함

〈주요내용〉

- 과징금 부과기준은 동법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어
- 부과기준에 의하여 징수하는 절차만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 과징금은 납부통지서에 의거 고지
 - 체납시에는 5/100의 가산금 징수
 - 체납처분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준용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 ① 여행업(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 ② 관광숙박업
 - ③ 관광객 이용시설업(운동, 음식, 휴양시설 등)
 - ④ 국제회의 용역업
 - ⑤ 관광편의시설업(관광사진업, 토속주 판매업 등)
 - ⑥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등)
 - 관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한다.
 - (관광편의시설업, 카지노업은 제외)
 - ┌ 카지노업 → 허가
 - └ 관광편의시설업 → 지정
- 관광진흥법 제19조(과징금 부과)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관광진흥법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6조(과징금 위반행위의 종별가 금액)

- 관광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1과 같다.

- 교통부장관(문화체육부장관) 재위임 승인

- 관광사업 처리지침('95. 3.24)

- 서울특별시장 위임 서울시규칙 제2700호('95.6.20)

- 위임내용: 국내 및 국외여행업에 관한 다음 사항

-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 명의이용의 허가
- 관광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검토의견〉

- 관광사업 중 국내·국외여행업에 대한 일부 권한위임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조례로서 타당한 제정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指

(질의자: 천상욱위원, 홍승태위원, 정창희위원)

- 과징금의 세입 구분은?

○ 직원 부족으로 인한 형식적 단속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 합동단속시 인원은?

(답변자: 문화공보실장 김태호)

- 세외수입으로 구세됩니다.

○ 업무처리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연구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직원 1명과 협회 7명입니다.

5. 討論 要指: 없음

6. 審査結果: 원안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指: 해당 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심사보고서 참석위원)

현수한위원장, 홍기서간사, 안철주위원,

오금남위원, 천상옥위원, 심재득위원,
정창희위원, 홍승태위원, 정태순위원

(參 照)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10. 26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10월 18일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5년 10월 20일

다. 상정일자 : 제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5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指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오병한)

가. 제안이유

○ 그 동안 정원 외로 관리해오던 지방 전
임 전문직공무원(교통, 통역, 의사)을 서
울시 시정 12200-625('95.9.4)호에 의거
정원이 승인되어 총정원에 포함하여 정
원을 관리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구 본청 : 6명 중(7급 1, 8급 1, 9급 4)
 - 7급 1명 : 교통전문요원(전임 전문직 다급)
 - 8급 1명 : 교통전문요원(전임 전문직 라급)
 - 9급 4명 : 교통전문요원(전임 전문직 마급)
- 통역원 2명(전임 전문직 마급)
- 직속기관(보건소) : 5명 중(5급 2, 6급 3)
 - 5급 2명 중 : 의사(전임 전문직 가급)
 - 6급 3명 중 : 의사(전임 전문직 나급)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指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개정 배경〉

○ 종전 정원 책정시에 의사, 통역원, 교통전
문직 등 전문직종은 정원에 책정치 않고
계약에 의해 임의채용하던 것을 금번 관계
법 개정으로 전문직도 정원에 포함시켜 조
례의 통제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새로운
증원없이 기존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을 정
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개정 배경임

〈개정 골자〉

○ 구 본청

- 교통행정과 교통전문요원 4명
(교통시설 및 신호체계 전문가)
- 문화공보실 통역요원 2명
(효자동 사랑방 근무)
- 상기 6명을 구 본청 정원에 포함
(*당초 1,107명→1,113명)

○ 보건소

- 기존 근무의사 5명을 보건소 정원에 포함
- 당초 정원 75명→80명

〈관계법령〉

○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제
1항5호-'95. 5.16 개정

⑤ 1개의 직위에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기
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정원을 유
지하여야 한다.

○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
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내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내부부장
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
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 책
정의 적정 여부 등 그 검토 결과를 첨부
하여야 한다.

○ 지방전임공무원 정원 승인

- 내부부장관 승인 : 내부부지기 12200-653
('95.8.25)
- 서울특별시장 승인 : 시정 12200-625
('95.9.5)

〈검토의견〉

- 새로운 정원의 증가없이 기존 전문직을 정
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 이는 종전까지는 전문직 공무원을 정원 외
로 관리함으로써 의회의 견제없이 단체장
이 임의로 전문직을 늘릴 수 있는 소지가
있었고
- 더욱이 '95년 7월 1일 이후는 단체장이 민선
이므로 청탁에 의한 정실인사로 예산의 낭
비나 인사질서의 문란의 소지가 증대되어
- 이를 봉쇄키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이해
되는 바 이는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指

(질의: 오금남위원, 정창희위원, 홍승태위원)

- 전임 전문직공무원과 행정직공무원의 임금 차이는?
- 교통전문요원의 임용기준은?
- 전임 전문직 의사인지 전문의 의사인지?
(답변: 총무국장 오병한)
- 동일합니다.
- 학위 및 전문연구기관의 근무경력 등으로 임용합니다.
- 전임 전문직 의사입니다.

5. 討論 要指: 없음

6. 審査結果: 원안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指: 해당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심사보고 참석위원)

현수한위원장, 홍기서간사, 안철주위원,
오금남위원, 천상욱위원, 심재득위원,
정창희위원, 홍승태위원, 정태순위원

(參 照)

서울특별시종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10. 26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5년 10월 18일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1995년 10월 20일
- 다. 상정일자: 제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5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指

(제안설명자: 지적과장 서희석)

- 가. 제안이유
 - '95. 3. 1 구 직제 개편과 관련 토지관리과가 지적과로 통합됨.
- 나. 주요골자
 -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를 토지관리과장,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에서 간사는 지적과장, 서기는 지적계

장으로 각각 개정(안 제6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指

(보고자: 전문위원 장소수)

〈개정사유〉

- 부동산중개업 분쟁 조정업무가 종전에 토지관리과 소관으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간사와 서기를 토지관리과 직원으로 규정하였으나, '95. 3. 1 기구 개편시 토지관리과가 없어지고 지적과로 통폐합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간사와 서기를 지적과 직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임.

〈개정 골자〉

-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제6조 내용 중
 - 간사를 토지관리과장에서 지적과장으로,
 - 서기를 토지관리과 토지조사계장에서 지적과 지정계장으로 개정

〈관련사항〉

- 종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내용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항에 의하여 구청장 하에 설치되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한다.
 - 제3조(구성)
 - 〔위원장-구청장
 - 위 원-재무국장, 재무과장, 변호사 1인, 대학교수 1인, 구의원(정태순) 1인, 중개인협회종로지회장 1인
 - 제6조(간사 및 서기)
 -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으로,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으로 한다.
-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5(조정의 처리)
 - ①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15일 이내에 수락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며

- ② 합의서가 작성된 때에는 피청구인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 등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구개편 내용

- 서울특별시종로구규칙 제205호('95.3.1)
- 토지관리과를 지적과에 통폐합하며
 - 지적과에 지정계, 토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가조사계를 둔다.

〈검토의견〉

- 기구개편에 따른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指: 없음

5. 討論 要指: 없음

6. 審査結果: 원안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指: 해당 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심사보고 참석위원)

현수한위원장, 홍기서간사, 안철주위원,
오금남위원, 천상욱위원, 심재득위원,
정창희위원, 홍승태위원, 정태순위원

○議長 金憲中 玄壽漢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관광사업에 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의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의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관광사업에 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의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의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의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의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大型 및 多衆利用施設 安全點檢 結果報告의 件(羅在岩議員 外 4人 發議)

(11時 26分)

○議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4항 大型 및 多衆利用施設 安全點檢 結果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특별히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다중이용,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시설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 사항입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委員會 李炯述 委員長! 나오셔서 간단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委員長 李炯述 저희 종로관내 대형건물 및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청으로부터 청취 보고받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委員長 李炯述입니다.

존경하는 金憲中 議長님, 그리고 洪承泰 副議長님을 비롯한 동료 議員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온 시민이 건축물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은 과연 안전한가 여부에 대하여 구청에서 자체 추진한 내용을 청취하고자 羅在岩議員 外 4人이 발의한 대형 및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다루었습니다.

본 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전점검 대상건물이 총 108동으로 '95년 10월 20일 현재 80동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A급이 25동, B급이 42동, C급이 13동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점검방법은 안전관리특별법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전문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신설되어 정기적으로 3년마다 전문 안전진단기관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다는 내용을 보고드리며 더불어 구청 관계공무원에게도 업무추진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대형및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결과보고의건
심사보고서

1995. 10. 26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5년 10월 17일

나재암의원외 4인

나. 회부일자: 1995년 10월 20일

다. 상정일자: 제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5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指

(제안설명자: 도시정비국장 조학래)

가. 제안이유

○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관내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건물관리주체(소유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아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시민생활에 안전을 기하고 있음

나. 주요골자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점검 대상건축물 총 17동과 1종 시설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이상 건축물 6동 및 2종 시설물로서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이상 건축물 11동과

○ 다중이용시설물로 시장 9동, 호텔 17동, 병원 9동, 음식점 5동, 공연장 43동, 교육 시설 8동으로 구 관내 총 108동이 있습니다.

4. 質疑 및 答辯 要指

(질의자: 강래규위원, 나재암위원, 이병문위원, 김이환위원, 김정대위원, 선상선위원)

○ 아파트 점검이 제외된 이유는?

○ 점검기록부는 몇년 비치하는지?

○ 안전점검 결과 C급에 대한 조치와 점검이 언제 끝나는지?

○ 공사장에 대한 안전시공 지도감독 철저 당

부

○ 도시가스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 확인 여부는?

○ 승인동에 소재하고 있는 제일아케이트 안전점검 미 실시 여부는?

(답변자: 건설과장 정연진, 산업과장 박기용)

○ 일반용도에 해당되는 건축물만 점검을 실시하였고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안전점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근의 것으로 3년간 비치할 것입니다.

○ C등급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결과에 의거 건물 소유주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품질좋은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물주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향후 행정 조치할 생각입니다.

5. 報告書 作成 參席委員

(이형술위원장, 김정대간사, 이병문위원,
선상선위원, 김이환위원, 강래규위원,
나재암위원, 이만로위원)

○議長 金憲中 李炯述 委員長!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성공리에 이끌어 주신 議員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홍보를 담당해 주신 지역신문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1分 散會)

○出席議員 19名

金 憲 中	安 哲 柱	李 炯 文
吳 錦 南	玄 壽 漢	玄 孝 善
沈 載 得	鄭 泰 淳	李 炯 述
洪 承 台	羅 在 岩	丁 昌 熙
朴 鍾 植	朴 文 培	洪 起 瑞
康 來 奎	金 以 煥	金 正 大
宣 相 善		

○關係公務員

區 廳	長 鄭 興 鎮
財 務 局	長 金 誠 泰